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20
----------	-------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손명수 · 전용기 · 문진석
문정복 · 황 회 · 이강일
김영배 · 임호선 · 어기구
권철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 시 출처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플랫폼 사업자 등이 무료 상담 서비스 등을 미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원래의 수집 목적을 벗어나 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함에도 정보주체는 이러한 사실과 대가 규모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거나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과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제3항제6호 및 제20조제1항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실비 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출처”를 “출처(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수집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대가의 내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 ① · ② (생략)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④ · ⑤ (생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하 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제3 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 용(실비 보전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 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 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 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 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 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 ----- ----- ----- -----

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u>출처</u> 2. · 3. (생략) ② ~ ④ (생략)	-----. 1. -----<u>출처</u>(개인 정보를 유상으로 수집한 경우 에는 그 사실 및 대가의 내 용)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